

「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」 일부 개정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9조부터 제52조, 국토교통부 「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」, 「군포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「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명칭 변경
- 공업지역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변경[(지침 7-3-1-(3), 7-3-1-(9))]
-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신설[(지침 7-3-1-(4), 7-3-1-(10))]
-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신설(지역경제 활성화 관련)

2025. 9. 3.

군 포 시 장

붙임 :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1부